|  |  |  |
| --- | --- | --- |
|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령 제5호**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규정>이 국가인터넷안전정보화판공실 실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임 즈왕룽원(庄榮文)  2019년 12월 15일  **제1장 총칙**   1. 양호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내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활동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라 함은 정부•기업•사회•네티즌 등 주체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의 육성 및 실천을 근본으로 삼고 인터넷 정보콘텐츠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하여 인터넷 종합관리체계 수립 및 보완, 맑고 명랑한 인터넷 공간 조성, 양호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전개하는 긍정 에너지 전파, 불법•불량 정보 처치 등 관련 활동을 지칭한다.   1. 국가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전국의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와 감독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하며, 각 유관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지방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와 관련 감독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하며 지방의 각 유관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제2장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1.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공서양속에 따라야 하며 국가이익•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2.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제작•복제• 발표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홍보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도로•이론•제도•문화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고 생동하게 해석하는 내용 4. 중국공산당의 이론•노선•방침•정책과 중앙의 중대한 결정•계획을 홍보하는 내용 5. 경제•사회 발전 성과를 전시하고 인민대중의 위대한 분투와 열렬한 삶을 알리는 내용 6.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도덕•문화와 시대적 정신을 홍보하며 중화민족의 적극적인 정신 상태를 충분히 보여주는 내용 7. 사회적 관심사에 효율적으로 응답하고 의혹을 풀어주며 사실을 분석하고 도리를 밝힘으로써 대중의 공통인식 도출에 도움에 되는 내용 8. 중화 문화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되며 중국의 진실적•입체적•전면적인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는 내용 9. 품위•품격•책임성이 있고 진(眞)•선(善)•미(美)를 칭송하며 단결•안정을 촉진하는 기타 내용 10.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불법정보를 제작•복제•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11. 헌법의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내용 12.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정권을 전복하거나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내용 13. 국가의 영예와 이익을 해치는 내용 14. 영웅열사의 업적과 정신을 왜곡•비하•모독•부정하거나 모욕•비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영웅열사의 성명•초상•명예•영예를 침해하는 내용 15. 공포주의•극단주의를 선양하거나 테러 활동, 극단주의 활동을 벌이도록 선동하는 내용 16. 민족적 증오심,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17. 국가의 종교 정책을 파괴하거나 사이비 종교 및 봉건 미신을 선양하는 내용 18. 헛소문을 유포하거나 경제질서와 사회질서를 교란시키는 내용 19. 음란•색정•도박•폭력•살인•공포를 퍼뜨리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20. 타인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타인의 명예•사생활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21.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기타 내용      1.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는 조치를 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불량 정보의 제작•복제•발표를 방비하고 저지하여야 한다. 2. 과장된 제목 사용, 내용과 제목이 심각하게 불일치 3. 스캔들•추문•부정행위에 관한 언론 플레이 4. 자연재해•중대사고 등 재난에 대한 부적절한 평론 5. 성적 암시, 성희롱 등 성적인 연상을 유도하는 내용 6. 폭력•공포•잔인 등 심신 불편을 유발하는 내용 7. 집단 차별 또는 지역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 8. 저속•범속•세속을 선양하는 내용 9. 미성년자의 불안전 행위, 사회공중도덕 위반행위 모방을 유발할 수 있거나 미성년자의 나쁜 습관을 유도하는 내용 10.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기타 내용   **제3장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1.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정보콘텐츠 관리 주체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플랫폼의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적이고 건강하며 진취적이고 선을 지향하는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2.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해당 플랫폼의 인터넷 정보 콘텐츠 생태계 관리세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용자 가입, 계정 관리, 정보발표 심사, 댓글 심사, 판면•웹페이지 생태계 관리, 실시간 순찰, 응급처치와 인터넷 헛소문, 암흑산업체인 정보 처치 등 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담당자직을 설치하고 업무 범위 및 서비스 규모와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배정하여야 하며 교육•평가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의 소양을 제고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이 규정 제6조에 규정된 정보를 전파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정보의 전파를 방비하고 저지하여야 한다.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정보콘텐츠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 규정 제6조, 제7조에 규정된 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주류(主流) 가치 지향성을 고수하고 정보 추천 메커니즘을 최적화하며 판면•페이지 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다음 각 호의 중점 부분(서비스 유형, 위치 섹션 등 포함)에서 이 규정 제5조에 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의 초기화면，팝업 창 및 중요 뉴스 정보콘텐츠 페이지 등 3. 인터넷 이용자 공중계정 정보 서비스의 베스트, 검색 순위 등 4. 블로그, 미니 블로그 정보 서비스의 인기 추천, 랭킹, 팝업 창 및 지리적 위치에 기한 정보 서비스 섹션 등 5. 인터넷 정보 검색 서비스의 핫 키워드, 핫 포토 및 기본 검색 등 6.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서비스의 초기화면, 랭킹, 팝업 창 등 7. 인터넷 오디오•비디오 서비스의 초기화면, 발견, 베스트, 랭킹, 팝업 창 등 8. 인터넷 웹사이트 네비게이션 서비스, 브라우저 서비스, 입력기 서비스의 초기화면, 랭킹, 스킨, 관련어, 팝업 창 등 9. 디지털 독서, 인터넷 게임, 인터넷 애니메이션 서비스의 초기화면, 베스트, 랭킹, 팝업 창 등 10. 생활 서비스, 지식 서비스 플랫폼의 초기화면, 인기 추천, 팝업 창 등 11. 전자상거래 플랫폼 초기화면, 추천 코너 등 12. 모바일 앱스토어, 지능형 모바일 단말기에 사전 설치된 응용프로그램과 내장된 정보콘텐츠 서비스의 초기화면, 추천 코너 등 13. 미성년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정보콘텐츠 특별 칼럼, 특별 코너 및 제품 등 14.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현저한 위치에 있거나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쉬운 기타 중점 부분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상기 중점 부분에 이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이 규정 제10조, 제11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추천 모델을 설정하여야 하며 수동 개입 및 이용자 자주적 선택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미성년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미성년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인터넷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성년자가 심신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권장한다. 3.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에 설치된 광고 전시공간과 해당 플랫폼에 전시된 광고 내용에 대한 심사 및 순찰을 강화하여야 하며 불법광고가 게시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관리규칙 및 플랫폼 공약을 제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용자 약관을 보완하여 이용자의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과 약정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 계정 신용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용자 계정의 신용 상태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현저한 위치에 간편한 신고•제보 코너를 설치하고 신고•제보 방식을 공개하여야 하며 대중의 신고•제보를 적시에 접수•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답변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업무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례 보고서에는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업무 현황,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담당자의 직책 이행 상황, 사회적 평가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   1.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는 문명하고 건강하게 인턴넷을 이용하여야 하며 법률•법규의 요구와 이용자 약관의 약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게시물 게시, 회신, 메모, 동영상 댓글 자막(彈幕) 등 형식으로 인터넷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문명하게 교류하고 이성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정 제6조에 규정된 정보를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정보를 방비하고 저지하여야 한다. 2. 인터넷 그룹, 게시판•커뮤니티 섹션 구축자와 관리자는 그룹•섹션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률•법규, 이용자 약관 및 플랫폼 공약 등에 의거하여 그룹•섹션 내 정보 발표 등 행위를 규율하여야 한다. 3.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고•제보 등 방식으로 인터넷상 불법 행위와 불량 정보를 감독하며 공동으로 양호한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과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모욕, 비방, 협박, 헛소문 유포,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위법행위를 행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정보의 발표•삭제 및 정보 구현에 개입하는 기타 수단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법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6.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딥 러닝, 가상현실 등 신기술과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7.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공으로 또는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트래픽 조작, 트래픽 하이재킹, 계정의 허위 등록, 계정 불법거래, 이용자 계정 조종 등 행위를 행하거나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 8.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당기(黨旗)•당장(黨徽)•국기(國旗)•국장(國徽)•국가(國歌) 등 당(黨)과 국가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표시•콘텐츠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중대 행사, 중대 기념일과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법률•규정을 어기고 온라인 상업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인터넷 산업 조직**   1. 산업 조직이 서비스 지도와 교량•유대 역할을 수행하고 회원업체가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도록 유도하며 주선율(主旋律)을 칭송하고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며 불법정보를 반대하고 불량정보를 방비•저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산업 조직이 산업 자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를 위한 산업 규범 및 자율 공약을 제정하며 콘텐츠 심사표준 세칙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회원업체가 서비스 규범을 수립•완비하고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지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산업 조직이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유도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업체•종업원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산업 조직이 산업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정관에 의거하여 산업 평의 등 평가•장려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회원업체에 대한 장려 및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회원업체의 신용 유지 인식을 강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6장 감독관리**   1. 각급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유관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정보 공유, 협의•통보, 연합 집법(執法), 사건처리 감독, 정보 공개 등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보완하여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태계 관리 업무를 협동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2. 각급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정보콘텐츠 관리 주체책임 이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전개하여야 하며 문제가 존재하는 플랫폼에 대하여 특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와 유관 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각급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법률•규정 위반행위 기록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법률•규정에 따라 상응하게 처리한다. 2. 각급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정부•기업•사회•네티즌 등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감독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의 생태계 관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7장 법률책임**   1.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가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은 법률•약정에 따라 경고•시정, 기능 제한, 업데이트 일시 중단, 계정 폐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지체없이 불법 정보콘텐츠를 삭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이 규정 제10조,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가 직책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등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이 규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의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가 직책에 의거하여 면담(約談)을 진행하고 경고를 주며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한 경우 정보 업데이트 일시 중단을 명하고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 이 규정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의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가 직책에 의거하여 면담(約談)을 진행하고 경고를 주며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경위가 심각한 경우 정보 업데이트 일시 중단을 명하고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이 규정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 등 유관 주관부서가 직책에 의거하여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인터넷안전정보화부서는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유관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중대 신용훼손 행위 연합징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한다.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 및 인터넷 정보콘텐츠 이용자가 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종사 제한, 인터넷상 행위 제한, 산업 접근 금지 등 징계 조치를 실시한다. 7. 이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관 주관부서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8장 부칙**   1. 이 규정에서 인터넷 정보콘텐츠 생산자라 함은 인터넷 정보콘텐츠를 제작•복제•발표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플랫폼이라 함은 인터넷 정보콘텐츠 전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를 지칭한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 이용자라 함은 인터넷 정보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지칭한다.   1.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令第5号**  《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规定》已经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室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20年3月1日起施行。  　　主任 庄荣文  　　2019年12月15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营造良好网络生态，保障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维护国家安全和公共利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活动，适用本规定。  本规定所称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是指政府、企业、社会、网民等主体，以培育和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为根本，以网络信息内容为主要治理对象，以建立健全网络综合治理体系、营造清朗的网络空间、建设良好的网络生态为目标，开展的弘扬正能量、处置违法和不良信息等相关活动。  **第三条**　国家网信部门负责统筹协调全国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和相关监督管理工作，各有关主管部门依据各自职责做好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工作。  地方网信部门负责统筹协调本行政区域内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和相关监督管理工作，地方各有关主管部门依据各自职责做好本行政区域内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工作。  **第二章　网络信息内容生产者**  **第四条**　网络信息内容生产者应当遵守法律法规，遵循公序良俗，不得损害国家利益、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  **第五条**　鼓励网络信息内容生产者制作、复制、发布含有下列内容的信息：  　　(一)宣传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全面准确生动解读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理论、制度、文化的；  　　(二)宣传党的理论路线方针政策和中央重大决策部署的；  　　(三)展示经济社会发展亮点，反映人民群众伟大奋斗和火热生活的；  　　(四)弘扬社会主义核心价值观，宣传优秀道德文化和时代精神，充分展现中华民族昂扬向上精神风貌的；  　　(五)有效回应社会关切，解疑释惑，析事明理，有助于引导群众形成共识的；  　　(六)有助于提高中华文化国际影响力，向世界展现真实立体全面的中国的；  (七)其他讲品味讲格调讲责任、讴歌真善美、促进团结稳定等的内容。  **第六条**　网络信息内容生产者不得制作、复制、发布含有下列内容的违法信息：  　　(一)反对宪法所确定的基本原则的；  　　(二)危害国家安全，泄露国家秘密，颠覆国家政权，破坏国家统一的；  　　(三)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四)歪曲、丑化、亵渎、否定英雄烈士事迹和精神，以侮辱、诽谤或者其他方式侵害英雄烈士的姓名、肖像、名誉、荣誉的；  　　(五)宣扬恐怖主义、极端主义或者煽动实施恐怖活动、极端主义活动的；  　　(六)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的；  　　(七)破坏国家宗教政策，宣扬邪教和封建迷信的；  　　(八)散布谣言，扰乱经济秩序和社会秩序的；  　　(九)散布淫秽、色情、赌博、暴力、凶杀、恐怖或者教唆犯罪的；  　　(十)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名誉、隐私和其他合法权益的；  (十一)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内容。  **第七条**　网络信息内容生产者应当采取措施，防范和抵制制作、复制、发布含有下列内容的不良信息：  　　(一)使用夸张标题，内容与标题严重不符的；  　　(二)炒作绯闻、丑闻、劣迹等的；  　　(三)不当评述自然灾害、重大事故等灾难的；  　　(四)带有性暗示、性挑逗等易使人产生性联想的；  　　(五)展现血腥、惊悚、残忍等致人身心不适的；  　　(六)煽动人群歧视、地域歧视等的；  　　(七)宣扬低俗、庸俗、媚俗内容的；  　　(八)可能引发未成年人模仿不安全行为和违反社会公德行为、诱导未成年人不良嗜好等的；  (九)其他对网络生态造成不良影响的内容。  **第三章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  **第八条**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应当履行信息内容管理主体责任，加强本平台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培育积极健康、向上向善的网络文化。  **第九条**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应当建立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机制，制定本平台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细则，健全用户注册、账号管理、信息发布审核、跟帖评论审核、版面页面生态管理、实时巡查、应急处置和网络谣言、黑色产业链信息处置等制度。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应当设立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负责人，配备与业务范围和服务规模相适应的专业人员，加强培训考核，提升从业人员素质。  **第十条**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不得传播本规定第六条规定的信息，应当防范和抵制传播本规定第七条规定的信息。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应当加强信息内容的管理，发现本规定第六条、第七条规定的信息的，应当依法立即采取处置措施，保存有关记录，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第十一条**　鼓励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坚持主流价值导向，优化信息推荐机制，加强版面页面生态管理，在下列重点环节(包括服务类型、位置版块等)积极呈现本规定第五条规定的信息：  　　(一)互联网新闻信息服务首页首屏、弹窗和重要新闻信息内容页面等；  　　(二)互联网用户公众账号信息服务精选、热搜等；  　　(三)博客、微博客信息服务热门推荐、榜单类、弹窗及基于地理位置的信息服务版块等；  　　(四)互联网信息搜索服务热搜词、热搜图及默认搜索等；  　　(五)互联网论坛社区服务首页首屏、榜单类、弹窗等；  　　(六)互联网音视频服务首页首屏、发现、精选、榜单类、弹窗等；  　　(七)互联网网址导航服务、浏览器服务、输入法服务首页首屏、榜单类、皮肤、联想词、弹窗等；  　　(八)数字阅读、网络游戏、网络动漫服务首页首屏、精选、榜单类、弹窗等；  　　(九)生活服务、知识服务平台首页首屏、热门推荐、弹窗等；  　　(十)电子商务平台首页首屏、推荐区等；  　　(十一)移动应用商店、移动智能终端预置应用软件和内置信息内容服务首屏、推荐区等；  　　(十二)专门以未成年人为服务对象的网络信息内容专栏、专区和产品等；  　　(十三)其他处于产品或者服务醒目位置、易引起网络信息内容服务使用者关注的重点环节。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不得在以上重点环节呈现本规定第七条规定的信息。  **第十二条**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采用个性化算法推荐技术推送信息的，应当设置符合本规定第十条、第十一条规定要求的推荐模型，建立健全人工干预和用户自主选择机制。  **第十三条**　鼓励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开发适合未成年人使用的模式，提供适合未成年人使用的网络产品和服务，便利未成年人获取有益身心健康的信息。  **第十四条**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应当加强对本平台设置的广告位和在本平台展示的广告内容的审核巡查，对发布违法广告的，应当依法予以处理。  **第十五条**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应当制定并公开管理规则和平台公约，完善用户协议，明确用户相关权利义务，并依法依约履行相应管理职责。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应当建立用户账号信用管理制度，根据用户账号的信用情况提供相应服务。  **第十六条**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应当在显著位置设置便捷的投诉举报入口，公布投诉举报方式，及时受理处置公众投诉举报并反馈处理结果。  **第十七条**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应当编制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工作年度报告，年度报告应当包括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工作情况、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负责人履职情况、社会评价情况等内容。  **第四章　网络信息内容服务使用者**  **第十八条**　网络信息内容服务使用者应当文明健康使用网络，按照法律法规的要求和用户协议约定，切实履行相应义务，在以发帖、回复、留言、弹幕等形式参与网络活动时，文明互动，理性表达，不得发布本规定第六条规定的信息，防范和抵制本规定第七条规定的信息。  **第十九条**　网络群组、论坛社区版块建立者和管理者应当履行群组、版块管理责任，依据法律法规、用户协议和平台公约等，规范群组、版块内信息发布等行为。  **第二十条**　鼓励网络信息内容服务使用者积极参与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通过投诉、举报等方式对网上违法和不良信息进行监督，共同维护良好网络生态。  **第二十一条**　网络信息内容服务使用者和网络信息内容生产者、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不得利用网络和相关信息技术实施侮辱、诽谤、威胁、散布谣言以及侵犯他人隐私等违法行为，损害他人合法权益。  **第二十二条**　网络信息内容服务使用者和网络信息内容生产者、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不得通过发布、删除信息以及其他干预信息呈现的手段侵害他人合法权益或者谋取非法利益。  **第二十三条**　网络信息内容服务使用者和网络信息内容生产者、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不得利用深度学习、虚拟现实等新技术新应用从事法律、行政法规禁止的活动。  **第二十四条**　网络信息内容服务使用者和网络信息内容生产者、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不得通过人工方式或者技术手段实施流量造假、流量劫持以及虚假注册账号、非法交易账号、操纵用户账号等行为，破坏网络生态秩序。  **第二十五条**　网络信息内容服务使用者和网络信息内容生产者、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不得利用党旗、党徽、国旗、国徽、国歌等代表党和国家形象的标识及内容，或者借国家重大活动、重大纪念日和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名义等，违法违规开展网络商业营销活动。  **第五章　网络行业组织**  **第二十六条**　鼓励行业组织发挥服务指导和桥梁纽带作用，引导会员单位增强社会责任感，唱响主旋律，弘扬正能量，反对违法信息，防范和抵制不良信息。  **第二十七条**　鼓励行业组织建立完善行业自律机制，制定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行业规范和自律公约，建立内容审核标准细则，指导会员单位建立健全服务规范、依法提供网络信息内容服务、接受社会监督。  **第二十八条**　鼓励行业组织开展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教育培训和宣传引导工作，提升会员单位、从业人员治理能力，增强全社会共同参与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意识。  **第二十九条**　鼓励行业组织推动行业信用评价体系建设，依据章程建立行业评议等评价奖惩机制，加大对会员单位的激励和惩戒力度，强化会员单位的守信意识。  **第六章　监督管理**  **第三十条**　各级网信部门会同有关主管部门，建立健全信息共享、会商通报、联合执法、案件督办、信息公开等工作机制，协同开展网络信息内容生态治理工作。  **第三十一条**　各级网信部门对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履行信息内容管理主体责任情况开展监督检查，对存在问题的平台开展专项督查。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对网信部门和有关主管部门依法实施的监督检查，应当予以配合。  **第三十二条**　各级网信部门建立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违法违规行为台账管理制度，并依法依规进行相应处理。  **第三十三条**　各级网信部门建立政府、企业、社会、网民等主体共同参与的监督评价机制，定期对本行政区域内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生态治理情况进行评估。  **第七章　法律责任**  **第三十四条**　网络信息内容生产者违反本规定第六条规定的，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应当依法依约采取警示整改、限制功能、暂停更新、关闭账号等处置措施，及时消除违法信息内容，保存记录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第三十五条**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违反本规定第十条、第三十一条第二款规定的，由网信等有关主管部门依据职责，按照《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理。  **第三十六条**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违反本规定第十一条第二款规定的，由设区的市级以上网信部门依据职责进行约谈，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责令暂停信息更新，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理。  **第三十七条**　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违反本规定第九条、第十二条、第十五条、第十六条、第十七条规定的，由设区的市级以上网信部门依据职责进行约谈，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责令暂停信息更新，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理。  **第三十八条**　违反本规定第十四条、第十八条、第十九条、第二十一条、第二十二条、第二十三条、第二十四条、第二十五条规定的，由网信等有关主管部门依据职责，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理。  **第三十九条**　网信部门根据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会同有关主管部门建立健全网络信息内容服务严重失信联合惩戒机制，对严重违反本规定的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网络信息内容生产者和网络信息内容使用者依法依规实施限制从事网络信息服务、网上行为限制、行业禁入等惩戒措施。  **第四十条**　违反本规定，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有关主管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第八章　附 则**  **第四十一条**　本规定所称网络信息内容生产者，是指制作、复制、发布网络信息内容的组织或者个人。  　　本规定所称网络信息内容服务平台，是指提供网络信息内容传播服务的网络信息服务提供者。  本规定所称网络信息内容服务使用者，是指使用网络信息内容服务的组织或者个人。  **第四十二条**　本规定自2020年3月1日起施行。 |